

# 세광중학교 학생생활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세광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 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4차혁명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학생기본권은 다음과 같다. 평등권 보장, 개성을 발현할 수 있는 권리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 표현 및 집회의 자유 보장, 양심의 자유,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 학생의 복지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이다.

###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의 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제2장 학생선도위원회

### 제4조 【학생선도위원회】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학생안전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그리고 학생안전부 생활지도 담당교사, **전문상담교사**, 각 학년부장을 위원으로 10인 이내 학교장이 위촉한다.

### 제5조 【기능】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단, 사안이 중요할 시에는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1. 학생생활 지도 문제 대책 및 협의  
2.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  
3. 지도위원이 제출한 사항  
4. 교내·외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제6조 【학교폭력전담기구】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폭력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를 둔다.  
② 전담기구 구성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생안전부장', '책임교사', '학부모 3인' 총 8인으로 구성하고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 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 제3장 학생생활

### 제1절 교내생활

#### 제7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8조 【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 제10조 【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 제11조 【폭력예방】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외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학교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학교폭력전담 책임교사 혹은 해당 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신고함
  3. 학교폭력 신고전화 국번 없이 117
- ③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 ④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부 또는 상담교사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의 허락 및 학생안전부장 입회하에 소지품을 검사하여 학교폭력에 사용될 여지가 있는 물품은 회수한다.
- ⑥ 폭력의 정도가 심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을 결정할 경우 학교장은 가해 학생에게 강제전학을 시킬 수 있다.
- ⑦ 기타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시한다.

#### 제12조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13조 【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③ 필요 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제14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 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제15조 【용의복장】

학생의 용의복장은 다음과 같다

- ① 교복의 색상, 디자인, 부착물 등은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 ② 교복착용시기
  - 1. 하복착용은 5월 중순 ~ 9월 하순, 동복착용은 9월 하순 ~ 이듬해 5월 중순, 하복 및 동복 입기 전 춘추복 착용을 가능하게 한다.
  - 2. 세부일정은 기후에 의해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안전부장**이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 ③ 교복착용방법
  - 1. 동복
    - 동복 재킷을 의무적으로 착용한다.
    - 동복 조끼(학교지정)를 의무적으로 착용한다.
    - 넥타이를 의무적으로 착용한다.
    - 와이셔츠는 바지 속에 넣어 입는다.
    - 온도에 따라 단정한 점퍼를 동복 재킷 위에 입을 수 있다.
  - 2. 하복
    -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되 상의를 밖으로 내어서 입는다.
  - 3. 춘추복
    - 재킷과 조끼 착용은 기온에 따라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한다.
    - 조끼 착용 시 와이셔츠는 바지 속에 넣어 입는다.
  - 4. 명찰은 항상 왼쪽 윗주머니에 잘 보이도록 부착한다.
  - 5.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④ 학생의 두발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인격을 존중하되, 다음 각 항과 같다.
  - 1. 두발은 **자율로 하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 모양은 하지 않는다.
- ⑤ 가방 및 실내화
  - 1. 가방은 학생용 가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2. 신발은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6조 【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주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②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 ③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 ④ 소정의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 ⑤ 학생회 임원 및 바른생활부 부원으로서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제외할 수 있다.

**제17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입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8조 【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① 학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병역관계(징병신체검사 등)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증인 출두 등)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기간
  - 6.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8.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 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④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 이후부터 하교시각 사이에 등교를 하면 지각으로 처리한다.
- ⑤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전에 하교하는 경우로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 이전에 등교하였다가 어떤 사유로든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하교한 경우에 조퇴로 처리한다.
- ⑥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결과로 처리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

는 제외한다.

- ⑪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입력하지 않는다. 다만,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 ⑫ 학교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결석 사유를 입력하는 장기결석(학교에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단기결석이라도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다만,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질병사유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 ⑬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종류별 처리 방법은 결석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제19조 【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①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1일)
- ② 입양 : 학생 본인(20일)
- ③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5일)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 제20조 【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3년 개근, 1년 개근으로 한다.
- ②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 ③ 3년간 지각(또는 조퇴, 결과) 1회~8회인 경우와 최대 결석 2일과 지각(또는 조퇴, 결과) 2회인 경우까지 3년 정근으로 한다.

#### 제21조 【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3.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에) 결석한 경우
- ②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결석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 한정한다.)
  4.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되어 피의자 조사,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감되어 결석한 경우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에 따른 출석정지
  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7.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교외 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결석 등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8. 학업중단 숙려 기간 중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③ 기타 결석
  1.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2절 교외생활

### 제22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⑧ 법으로 금지한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 제23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 학생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의 이상행동

## 제3절 정보통신

### 제24조 【사이버 생활】

건강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제25조 【통신기기 관리】

휴대 전화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여 바람직한 학습 태도를 형성하고 교육 활동 중 휴대 전화기의 파손 및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교내에서 휴대 전화기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 ② 제①항의 예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와 지속적인 연락이 필요한 경우
  2. 학습에 필요한 경우
- ③ 제②항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할 때, 담임교사의 재량에 따라 학생들이 휴대 전화기를 개인적으로 보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 ④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⑤ 학생들의 건전한 휴대폰 사용을 위한 예절 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 제4절 학생회

### 제26조 【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제27조 【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제28조 【금지활동】

건전한 학풍조성을 위배하는 단체를 조직 가입할 수 없고,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 제29조 【협의·지원 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 연구 활동
-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③ 각종 봉사활동
-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 ⑤ 좋은 학교 만들기 추진(대외활동, 행사 진행활동, 자율규제 활동, 부별 활동 등)

### 제30조 【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 제31조 【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 서기 1인
- ②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 제32조 【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① 학습부 : 학급도서를 관리하며,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습에 관련된 사항
- ② 학예부 : 학급신문을 발행하며 문화·예술행사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 ③ 바른생활부 : 학내·외 질서 및 교풍 확립 등에 관한 사항
- ④ 체육부 : 체육행사를 담당하며,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 ⑤ 미화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 ⑥ 선교봉사부 : 학우들의 경조사를 챙기고, 선교활동과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제33조 【직무 및 선출】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는 학생회 활동 일체를 기록·관리한다.
4.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기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은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규정에 의해 선출하고,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2. 회장 및 부회장, 학생회 임원은 책임감과 지도력이 있으며 모범학생으로서 직전 학년 및 당해 학년도에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와 선도위원회 조치 결과 관련 교내봉사 이상의 처벌 및 학교폭력 관련 서면사과 이상의 처벌이 없으며, 1년간 무단결석이 3일 미만인 자.
3.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결정할 수 있다.
4.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단, 임기 중에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와 선도위원회 조치 결과 관련 교내봉사 이상의 처벌 및 학교폭력 관련 서면사과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는 그 직에서 해임되고,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4조 【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서기, 각 부서 부장과 차장, 각 학급 반장으로 구성한다.
2.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예산심의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학생생활규정에 관한 의안 제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4조의2 【학급회】

학급의 모든 일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 학급회를 둔다.

① 구성

1. 학급회는 의결기관으로 반장, 부반장, 서기, 각 부장 및 반 학생으로 구성한다.
2. 학급반장은 의장이 된다.
3. 각 부서는 학생회 조직(제32조)에 따른다.(단, 필요에 따라 학급자체 계획 조직)
4. 학급의 반장, 부반장 선출은 임원의 선출방법(제33조 ②)에 준한다.

② 기능

1. 학급 자치활동을 통한 자율 및 통제능력 배양.
2. 학급의 기본운영 및 각종 학생참여활동의 계획 추진.
3. 다양한 동아리 활동 추진.
4. 기타 학급에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학급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정기회는 자치(자율)시간에 실시하고 임시회는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급인원의 1/2이상 또는 담임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아 개최한다.
3. 학급회의 의결은 학급 재적인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학급회의에서 논의된 회의 결과나 건의 사항은 학생회에 상정 논의한다.
5. 학생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학급회에서 보고한다.
6. 학급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학교전체와 관련된 내용은 반장이 대의원회에서 건의한다.

#### 제35조 【집행위원회】

- ①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 ② 기능
  1.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
  3.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4. 기타 중요한 의안
- ③ 회의 : 집행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학생안전부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도 소집한다.

#### 제36조 【예산편성】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7조 【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장 학생지도

### 제1절 생활지도

#### 제38조 【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도우미를 운영할 수 있다.

#### 제39조 【진로진학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진학지도에 힘쓴다.

-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② 진로상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 제40조 【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을 예방하고 선도한다.

### 제2절 시 상

#### 제41조 【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1. 교과학습부문: 학업상
2. 도덕생활부문: 공로상, 봉사상, 선행상, 효행상, 준법상, 근로상, 우정상, 사랑상, 환경상
3. 특별활동부문: 인문사회상, 예술체육상, 자연과학상
4. 근면부문: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1년 개근상
5. 특별상: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

#### 제42조 【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 제43조 【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 제44조 【학력부문】

- ① 학업상 : 교과 석차가 학년 전체 학생 수의 2% 이내에 든 학생에게 학기 말에 수여한다.

#### 제45조 【도덕생활부문】

도덕생활부문의 시상은 수를 제한하지 않고 수시로 표창 근거에 의거 표창할 수 있으며 당해 학년도 교내봉사활동 및 학교폭력 관련 서면사과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 ①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적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학생에게 수여한다.
- ② 봉사상 :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서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봐준 행적이 뚜렷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 ③ 선행상 : 예절과 행실이 바르며 학교, 가정, 사회생활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 ④ 효행상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 ⑤ 준법상 : 학교 규칙 및 사회제반 규칙을 잘 준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 ⑥ 근로상 : 청소미화 봉사활동이나 역할분담활동, 주변활동 등에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 ⑦ 우정상 : 학교에서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친구, 형제, 남매간의 우정이 돈독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 ⑧ 사랑상 : 항상 밝게 웃는 표정으로 바르고 고운 인사말 쓰기를 생활화하며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잘 베푸는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 ⑨ 환경상 : 쓰레기 분류 및 재활용 운동과 물건 아껴 쓰기 등 아가모 운동을 실천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 제46조 【특별활동부문】

- ① **인문사회상** :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교육감상(또는 이에 준하는 상) 이상의 입상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졸업반에 한함)**
- ② **예술체육상** :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교육감상(또는 이에 준하는 상) 이상의 입상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졸업반에 한함)**
- ③ **자연과학상** : 과학, 기술, 컴퓨터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교육감상(또는 이에 준하는 상) 이상의 입상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졸업반에 한함)**

**제47조 【근면부문】**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고로 인한 결석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 ①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 ②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지각(또는 조퇴, 결과) 1회~8회인 경우와 최대 결석 2일과 지각(또는 조퇴, 결과) 2회인 자에게 수여한다.
- ③ 1년 개근상 :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상장 수여 없이 기록만 함)

**제48조 【특별상】**

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49조 【학생선도제 시상】**

최근 1년간 선행이 많은 학생에게 모범상을 줄 수 있다.

**제3절 학생선도제**

**제50조 【훈육·훈계 지도 방법】**

훈육·훈계 대상자의 지도는 학생선도제 운영 원칙을 따르고, 학교폭력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훈육·훈계에 따르지 아니하는 학생은 즉시 위클래스 등에 격리하여 지도하고 즉각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그 결정에 따른다. 기타 사항은 징계 규정에 따라 지도한다.

**제51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도의적 책임은 물론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을 한다.

**제52조 【운영원칙】**

학생선도제의 운영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선도제는 교사의 생활지도 누가 기록을 근거로 운영한다
- ② 학생들의 5대 덕목(예절, 질서, 친절, 절제, 청결)을 실천하는데 목적을 둔다.
- ③ **학생선도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활용한다.**
- ④ 선행은 선행사항기록부에 기록하고, 교칙위반 등은 학생선도 누가기록부를 활용한다.

**제53조 【학생선도 누가 기록】**

- ① 학생선도 누가기록(학생생활부용)은 학생생활부 교사가 교칙위반 사항을 기록한다.
- ② 학생선도 누가기록(학년부장용)은 학년부장이 교칙위반 사항을 기록한다.
- ③ 학생선도 누가기록(담임교사용)은 담임(학급담임 및 교과담임)이 교칙위반 사항을 기록한다.

**제54조 【학생선도 누가기록부의 활용】**

- ① 수시로 교칙 위반 사례를 누계하여 교칙 과다 위반 학생에 대해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55조 【선행사항 기록부 활용】

- ① 수시로 선행 사항을 기록하여 징계 시 징계 경감 및 모범상 추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56조 【학생선도 누가기록 삭제】

- ① 징계규정에 의거하여 **선도위원회에 회부**, 징계 등 처벌 중에 있는 학생은 표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선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선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만큼 적발 사례를 삭제할 수 있다.**

제57조 【선행 누가기록 작성 기준】

선행 누가기록 작성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구분	항목	선행	비고
환경미화 및 봉사활동	1	단체 및 행사 활동에 솔선수범함	
	2	청소활동을 성실하게 참여함	
	3	학급 비품 관리를 성실하게 함	
	4	학급 도우미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함	
	5	거동이 불편한 학생의 도우미 역할에 성실하게 참여함	
	6	교통지도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함	
	7	또래상담, 또래중재, 또래조정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함	
	8	바른생활부원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함	
준법신고 활동	9	비품, 공공기물의 고장·훼손 신고	
	10	흡연 또는 음주 행위 신고로 또래 보호에 힘씀	
	11	학생 안전사고 신고로 또래 신변 보호에 힘씀	
	12	학교폭력 관련 신고 및 학교폭력을 말린 학생	
	13	일반 분실물 습득 신고	
	14	귀중품 또는 현금 등의 습득 신고	
기타	15	복장과 용의를 늘 단정히 함	
	16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함.	
	17	교사의 지시를 존중하고 잘 따름	
	18	쓰레기 줍기를 실천함	
	19	학급, 학교에서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	
수업태도	20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	
	21	수업 태도가 매우 모범적임.	
모범 덕목	22	기타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덕목을 실천함	

제58조 【학생선도 누가기록 부여 기준】

학생선도 누가기록 부여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다만, 가볍지 않은 사안은 72조 징계규정을 따른다.

구분	항목	위반사항
예절	1	침을 뱉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
	2	실내정숙 위반 행위(공놀이, 물장난, 뛰거나 소란한 행위)
	3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는 행위
	4	쓰레기 무단 투기, 침 뱉기, 실내에서 껌 씹기
	5	사물함이나 창틀, 난방기 등에 개인 물품(우산 포함)을 올려놓는 행위
	6	고성방가, 수돗물 장난 등 지나친 장난
	7	욕설 남용 등 경미한 기본예절 위반
	8	음식물 반입
	9	교탁 위에 걸터앉거나 올라가는 행위
	10	교탁 위를 어지럽히는 행위
	11	언행 불량 등으로 학교에 진정이나 통보가 오는 경우
	12	교사에게 <b>폭언, 폭행, 욕설 등 모욕감을 주는 언행 및 태도</b> (학생선도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 회부 가능)
용의복장	13	<b>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 모양</b>
	14	교복 착용상태 불량, 교복 미착용(재킷, 조끼, 넥타이 등)
	15	<b>실내에서 실외화 착용</b>
	16	최종 상의에 명찰 미 부착, 변조
근태	17	지각
	18	무단조퇴, 무단결과
	19	무단결석 1일당
	20	청소, 주변활동 등 역할(난방기, 사물함 등) 소홀
전자기기 사용	21	<b>휴대 전화기 사용으로 인한 수업 방해,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행위</b>
질서	22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빌리거나 장난삼아 가져감
	23	도박 및 외설물 소지 등
	24	공문서 위조(학생증, 출석부 및 기타 문서)
	25	담치기 및 무단외출
	26	급식 시간에 뛰어 가기, 새치기, 밀기 등의 행위
	지도 불응	27
28		주의 및 경고 사항 위반 시
29		<b>규정에 의한 징계·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b>
30		<b>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b>
수업	31	수업 시작 시간 이후 입실 혹은 수업 중 화장실 이용
	32	<b>수업 준비 미흡</b> (교과서, 필기구, 준비물 등)
	33	수업 및 면학 분위기 저해
	34	학교 행사 무단 불참(강당 예배 등)
	35	수업시간 중 화장실, 매점 등 이용 등 출입 행위
	36	고의적인 학교 기물 파괴 및 훼손(교실벽면, 책걸상, 화장실 낙서 등 포함)
시설보호 및 안전	37	책상 유리 밑에 이물질을 넣는 행위 일체
	38	난방기 위에 걸터앉는 등의 행위
	39	종이비행기 접거나 날리는 행위 혹은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40	출입문, 창문 등을 세게 여닫는 행위
	41	교실, 복도 등에서 공을 뛰기거나 던지는 행위
	42	높은 곳에서의 투기 행위 일체
	43	계단 난간을 타고 내려가는 행위
	44	자전거 안전수칙 위반행위(안전모 미착용, 차도주행 등)
	45	불요불급 외의 사유로 베란다가 출입하는 행위
	46	화기(라이터 등)를 소지하는 행위
	47	학생 이용 시설이 아닌 곳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학생

제59조 【징계 단계】  
 징계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지도 및 훈계	
현장 ⇨ 학년부장 ⇨ 학생안전부	
↓	↓
2단계 학생선도위원회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제60조 【기타 사안】  
 ①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② 학교폭력사안의 경우는 **학교폭력전담기구**에 회부하여 회의 결과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③ 교권침해 관련 사안은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의 결과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제5장 징 계

제61조 【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④ 학생징계는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낮은 단계에서부터 점차 높은 단계의 징계를 적용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반성과 재기의 기회를 준다.

제62조 【징계의 심의】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3조 【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학부모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제64조 【학생의 징계 등】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65조 【징계의 방법】

- ① “학교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학생안전부 및 진로상담부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 ③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 ④ 유예 : 유예처분의 징계 시 본인과 학부모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 ⑤ 징계 후 **학생징계대장**에는 그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 제66조 【징계 시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내의 봉사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사들의 업무 보조
  3. 교재·교구 정비
  4.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③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지정,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자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④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 ⑤ 기타: 위에 열거한 징계 외에 사안이 심각하거나 긴급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강력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7조 【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결정한다.

#### 제68조 【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69조 【징계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0조 【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71조 【재입학 또는 편입학】**

유예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제72조 【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징 계 규 정

구분	항	내 용	징 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예절	1	타인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	0			
	2	용모가 규정에 어긋날 경우	0			
	3	<b>반복적으로 비속어를 사용하며</b> 훈계를 잘 따르지 않음	0			
	4	반복적으로 예절을 잘 지키지 않거나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용모를 한 경우	0	0	0	
	5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로 주변 주민 등으로부터 진정이나 연락이 온 경우	0	0	0	
준법	6	공공장소에서 공중도덕을 위반한 경우	0			
	7	학교단체 행사에 고의적으로 불참하거나 고의로 행사를 방해한 학생	0			
	8	청소, 주변활동, 기타 학생 활동에 불참하거나 의무 이행에 게으른 학생	0			
	9	경찰서에 사안으로 입건되어 훈방된 학생	0	0		
	10	교사의 훈계나 지도 시 불순종하는 경우	0	0	0	0
	11	인장, 공문서, 제 증명을 위조하여 사용함	0	0	0	
	12	선도처분이나 학생안전부의 지도에 잘 따르지 않는 경우	0	0	0	0
	13	경찰서, 검찰에 구속 후 석방된 경우	0	0	0	0
	14	<b>반복적으로 규범을 어기며 나아짐이 없고 타 학생에게 피해를 줌</b>	0	0	0	0
	15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0	0	0	0
수업	16	수업 시간에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경우(면학 분위기 조성 방해 포함)	0			
	17	<b>수업을 방해하고</b> 훈계하는 교사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	0	0	0	0
	18	수업을 거부하여 수업진행을 방해한 경우	0	0	0	0
시험	19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	0	0	0	
	20	시험을 거부하거나 선동하는 경우		0	0	
	21	고의적으로 과제물을 손상하거나 제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0	0		
	22	시험 문제지 누설 혹은 문제지를 절취한 경우	0	0	0	0
	23	답을 고의로 쓰지 말자고 주도, 선동한 경우		0	0	0
근태	24	<b>미인정 결과, 미인정 조퇴</b> 를 월 2회 이상한 경우	0			
	25	<b>미인정 결석</b> 5일 이내의 학생	0	0		
	26	<b>미인정 결석</b> 이 계속하여 6일 이상 10일 이내	0	0	0	0
	27	<b>미인정 결석</b> 이 11일 이상이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0	0	0	0
	28	정당한 사유 없이 <b>미인정 결석</b> 이 20일인 학생	0	0	0	0
약물	29	일시적인 담배 및 라이터 소지, 흡연을 한 학생	0	0		
	30	일시적인 주류 소지, 음주를 한 학생	0	0		
	31	상습적인 담배 및 라이터 소지, 흡연 혹은 주류소지, 음주를 한 학생	0	0	0	0
	32	음주한 상태로 소란을 일으킨 학생	0	0	0	0
	33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를 복용한 자		0	0	0
안전	34	흉기를 제작 또는 소지한 학생	0	0	0	0
안전	35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 또는 실화·방화한 학생(방화 시도 행위 포함)	0	0	0	0
퇴폐	36	교내에서 <b>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b> 의 오락을 한 학생(교내 반입 행위 포함)	0			

행위	37	금전적인 내기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	0	0		
	38	성인을 희롱하거나 성적으로 모욕을 한 학생	0	0	0	
	39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탐독한 학생	0	0		
	40	음란성 영상물을 유포 및 타인에게 소개한 경우	0	0		
	41	학생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0	0		
	42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문란을 한 경우	0	0	0	
	43	성 문제를 일으켜 학교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0	0	0	0
금품	44	성관련 문제로 경찰에 입건된 경우	0	0	0	0
	45	타인의 금품을 절취한 경우	0	0	0	0
	46	상습적으로 타 학생의 금품을 절도한 경우	0	0	0	0
	47	부당하게 금품을 건거나 유용한 경우	0	0	0	0
	48	공과금을 유용한 경우	0	0		
	49	물품 외상 구입으로 학교에 진정이 온 경우	0	0		
집단 행위	50	다른 반(혹은 시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경우	0	0	0	0
	51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0	0	0	
교통 안전	52	불법집회, 불법동아리에 참석, 가입한 경우	0	0	0	
	53	면허증 없이 운전하거나 모터사이클을 탄 경우	0	0		
과외	54	모터사이클을 절도하거나 야간 질주를 한 경우	0	0	0	0
	55	불법 과외를 하거나 받은 경우	0	0		
통신	56	남의 휴대폰을 허락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0			
공공 기물	57	고의적으로 공공기물을 파손한 경우	0	0	0	0
	58	학교 컴퓨터의 중요 부품을 절취한 경우	0	0	0	
기타	59	동일 학년 기간 중에 2회 이상 징계 시 가중처벌 할 수 있다.	학생선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름			
	60	징계 규정 이외의 것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 제6장 개정방법

### 제73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74조 【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 제75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 제76조 【위원회 운영】

-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위원으로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 【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8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9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80조 【연수 및 교육】**

①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81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후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3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월 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